|  |  |  |
| --- | --- | --- |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외경무부, 공상총국 령 2001년 제8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제1조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업투자자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이 규정은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경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갖고 있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투자주식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함) 지간의 합병 또는 분립에 적용한다. 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의 합병은 관련 법률․법규 및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제3조 이 규정에서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 회사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의를 달성하고 1개 회사로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회사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2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흡수합병이란 회사가 본 회사가 기타 회사를 본 회사에 가입시키고 흡수측은 계속 존재하지만 가입측은 해산하는 것이다.신설합병이란 2개 이상 회사가 병합하여 1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합병 각측은 해산하는 것이다.제4조 이 규정에서 분립이라 함은 1개 회사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최고권리기구가 결의를 짓고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회사 분립은 존속분립과 해산분립 2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존속분립이란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고 본 회사는 계속 존재하는 동시에 1개 이상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해산분립이란 1개 회사를 2개 이상의 회사로 해체하되 본 회사는 해산하고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제5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중국의 법률․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원, 대등 및 공평경쟁의 원칙에 준하고 사회공공이익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외국투자 방향지도 잠정규정》과《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외국투자자가 독자, 지주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 못하는 산업의 회사에서 독자, 지주 또는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그 종사 업종 또는 경영범위의 변경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법규 및 국가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제6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세관과 세무, 외환관리 관련 부문이 반포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립후의 존속 또는 신설 회사는 심사비준기관과 세관, 세무 등 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쳐 원 회사가 적용하던 제반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제7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회사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에서 회사 설립, 변경 또는 등록말소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합병 신청 회사의 원 심사비준기관 또는 등록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합병후 회사 소재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하 국가공상총국이라 약칭함)이 수권한 등록기관이 심사비준 및 등록기관으로 된다.합병 신청 회사의 투자총액의 합이 회사 원 심사비준기관 또는 합병후 회사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의 권한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상응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 비준한다.합병 신청 회사중 최소 하나가 주식유한회사일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약칭함)에서 심사 비준한다.제8조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기존 회사를 해산하거나 격지에 회사를 새로 설립해야 할 경우에는 해산 회사 또는 신설 회사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 유한책임회사 지간의 합병은 유한책임회사로 된다. 주식유한회사 지간의 합병은 주식유한회사로 된다.상장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은 주식유한회사로 된다. 비 상장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은 주식유한회사로 될 수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로 될 수도 있다. 제10조 주식유한회사 지간의 합병 또는 회사 합병후 유한책임회사로 되었을 경우 합병후 회사의 등록자본은 원 회사 등록자본의 합이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가 합병후 주식유한회사로 되었을 경우 합병후 회사의 등록자본은 원 유한책임회사의 정미 자산을 합병 신청 주식유한회사의 주당 정미자산액으로 환산한 주식액과 원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총액의 합이다.제11조 이 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였을 경우 각측 투자자가 합병후의 회사에서 소지한 주권비율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 지간에 협상하거나 그의 원 회사 주권가치에 대한 자산평가기구의 평가결과에 따라 합병후의 회사 계약․정관에서 확정할 수 있다. 단 외국투자자의 주권 비율이 합병후의 회사 등록자본의 25%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제12조 분립후 회사의 등록자본액은 분립전 회사의 최고권리기구가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법규 및 등록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단 분립후 각 회사의 등록자본액의 합은 분립전 회사의 등록자본액이여야 한다.제13조 투자자 각측이 분립후의 회사에서 소지한 주권 비율은 투자자들이 분립후 회사의 계약․정관에서 확정한다. 단 외국투자자의 주권 비율은 분립후 회사 등록자본의 25%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회사합병이 흡수합병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흡수측 회사의 설립일이 합병후 회사의 설립일로 되며 신설합병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기관이 설립을 심사 비준하고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발행한 일이 합병후 회사의 설립일로 된다. 회사 분립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 경우 등록기관이 설립을 심사비준하고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발행한 일이 분립후 회사의 설립일로 된다.제15조 상장 주식유한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과 관련될 경우 관련 법률 및 법규, 상장회사에 대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문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필요한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제16조 회사가 중국 내자기업과 합병할 경우 중국의 외자유치 법률 및 법규 규정,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는 동시에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1) 합병 신청 중국 내자기업은《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2) 투자자는 합병후의 회사가 종사하게 되는 관련 산업의 투자자 자격에 대한 법률 및 법규, 부문 규정제도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3) 외국투자자의 주권 비율이 합병후 회사 등록자본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4) 합병 합의각측은 합병 신청 회사의 기존 종업원의 충분한 취업 또는 합리적 안치를 보장하여야 한다.제17조 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이 합병후 외국투자기업으로 되었을 경우 그 투자총액은 원 회사의 투자총액과 중국 내자기업 재무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기업자산 총액의 합이고 등록자본은 원 회사의 등록자본액과 중국 내자기업의 등록자본액 합이다. 합병후 회사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비율은 국가공상총국《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 비율 관련 잠정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수 상황에서 당해 규정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총국의 회동 비준을 받아야 한다.제18조 합병후의 회사가 회사와 합병한 중국 내자기업이 투자 설립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중국의 외자유치 산업정책 요구와 《외국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합병후의 회사는 외국투자 금지 산업 기업에서 지분을 소지하지 못한다.제19조 회사가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흡수측 회사가 신청인으로 되며 회사가 신설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각측이 협상하여 1명의 신청인을 확정한다.신청인은 심사비준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각 회사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회사합병 신청서와 회사합병 합의서(2) 회사 합병에 대한 각 회사 최고권리기구의 의결(3) 각 회사의 계약․정관(4) 각 회사의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5)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6) 각 회사의 그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7) 각 회사의 채권자 명부(8) 합병후 회사의 계약․정관(9) 합병후 회사 최고권리기구 구성원 명부(10) 심사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회사가 중국 내자기업과 합병할 경우 신청인은 심사 비준기관에 합병 신청 중국 내자기업이 투자 설립한 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제20조 회사합병 합의서에는 주로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합병 합의 각측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2) 합병후 회사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3) 합병후 회사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4) 합병형식(5) 합병 합의 각측의 채권․채무 승계 방안(6) 종업원 안치방법(7) 위약책임(8) 쟁의 해결방식(9) 합의서 체결 일자․지점(10) 합병 합의 각측이 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제21조 합병 신청 회사가 2개 이상의 원 심사비준기관이 있을 경우 해산 신청 회사는 이 규정 제18조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회사합병으로 인한 해산 신청서을 제출해야 한다.원 심사비준기관은 전항의 해산 관련 신청서를 입수한 일로부터 15일 내에 해산 동의여부에 대한 비준답변을 주어야 한다. 15일을 경과하여도 원 심사비준기관이 비준답변을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원 심사비준기관이 당해 회사의 해산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원 심사비준기관이 전항의 규정기간 내에 회사해산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비준답복을 내렸을 경우 해산 신청 회사는 해산신청서를 원 심사비준기관과 회사합병 심사비준기관의 공동의 한급 높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부문은 회사 해산신청서를 입수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재결해야 한다.심사비준기관이 회사합병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비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해산 관련 비준답변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제22조 분립 신청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회사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회사분립 신청서(2) 회사분립에 대한 회사 최고권리기구의 결의(3) 회사분립으로 존속 회사 또는 신설 회사(분립 합의각측이라 통칭함)가 체결한 회사분립합의서(4) 회사의 계약․정관(5) 회사의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6)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7) 회사 채권자 명부(8) 분립후 각 회사의 계약․정관(9) 분립후 각 회사 최고권리기구의 구성원 명부(10) 심사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회사 분립으로 격지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그 신설회사 설립에 대한 회사 설립지 심사비준기관의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3조 회사 분립합의서에는 주로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립 합의 각측이 약정한 명칭․주소․법정대표자(2) 분립후 회사의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3) 분립형식(4) 회사 재산에 대한 분립 합의 각측의 처분방안(5) 회사 채권․채무에 대한 분립 합의 각측의 승계방안(6) 종업원 안치방안(7) 위약책임(8) 쟁의 해결방식(9) 합의서 체결 일자․지점(10) 분립합의 각측이 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제24조 합병후의 존속 회사 또는 신설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한다.분립후의 회사는 분리합의에 따라 원 회사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제25조 심사비준기관은 이 규정 제18조 또는 제21조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서류를 입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합병 또는 분립 동의여부에 대한 초보적 심사답복을 주어야 한다.회사합병 심사비준기관이 외경부이고 외경부가 회사합병이 업종독점 추세가 있거나 어떤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통제지위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공평경쟁에 해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기 관련 서류를 입수한 후 관련 부문과 기구와 회동하여 합병 신청회사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하고 당해 회사 및 관련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전항에서 기술한 심사비준 기간은 180일로 연장할 수 있다.제26조 합병 또는 분립 신청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이 회사합병 또는 분립에 대한 초보적 비준답복을 내린 일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30일 내에 전국에서 발행하는 성급 이상 신문에 최소 3차 공시해야 한다.회사는 상기 통지서와 공시에서 기존 회사의 채무 승계방안을 설명해야 한다.제27조 회사 채권자는 이 규정 제25조에서 기술한 통지서 입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입수하지 못한 채권자는 제1차 공시일로부터 90일 내에 회사에 그 채무 승계방안에 대한 수정요구를 제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회사 채권자가 전항의 규정 기간에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합병 또는 분립 신청회사의 채권, 채무 승계방안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해 채권자의 주장은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 합병 또는 분립 신청회사는 제1차 공시일로부터 90일 후 회사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합병 신청회사의 신청인 또는 분립 신청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회사가 신문지면에 회사합병 또는 분립 공시를 3차 기재한 증명(2) 회사가 그 채권자에게 통지한 증명(3) 회사의 채권․채무처리 상황 관련 증명(4) 심사비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제29조 심사비준기관은 이 규정 제27조에 나열한 서류를 입수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회사합병 또는 분립 비준여부를 결정한다.제30조 회사가 흡수합병 형식을 취할 경우 흡수측 회사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수속을 밟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가입측 회사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지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등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회사가 신설합병 형식을 취할 경우 합병각측 회사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지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설회사는 신청인이 심사비준 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설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회사가 존속분립 형식을 취할 경우 존속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 수속을 밟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설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설립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분립 형식을 취할 경우 원 회사는 원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지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설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등록기관에서 회사 설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이 합병할 경우에는 회사가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관련 수속을 한다.제31조 회사합병 신청인 또는 분립 신청회사는 심사비준기관이 합병 또는 분립을 비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한 해산, 존속 또는 신설 회사 사항에 대하여 상응한 심사비준기관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반납 폐지, 변경 또는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제32조 회사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반납 폐지, 변경 또는 수령일로부터《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록 관리조례》와《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록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서 말소, 변경 또는 설립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설립등록은 회사 관련 변경, 등록말소 수속 완료후에 진행해야 한다.회사합병 또는 분립합의에 명기한 회사재산 관련 처분방안과 채권․채무 승계방안, 심사비준기관의 회사합병 또는 분립 비준 서류는 등록말소시 제공해야 하는 청산보고로 간주한다.제33조 회사가 신설합병 또는 분립으로 등록말소, 변경 등록 수속을 밟은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회사 설립 등록 관련 수속을 밟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제34조 회사 투자자가 회사합병 또는 분립으로 사인한, 개정한 회사계약․정관은 심사비준기관이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변경 또는 비준 발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35조 합병 또는 분립후의 존속 또는 신설 회사는 영업허가증 변경 또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채무자 및 채권자 변경 통지를 발송하고 전국에서 발행하는 성급 이상 신문에 공시해야 한다.제36조 합병 또는 분립후의 존속 또는 신설 회사는 영업허가증서를 교체하거나 수령한 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 세관, 토지관리 및 외환관리 등 관련 기관에서 상응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회사가 중국 내자기업과 합병하였을 경우 존속 또는 신설 회사는 외국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세관, 토지관리 및 외환관리 등 기관에서 관련 심사 확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제37조 회사합병 또는 분립 과정에 주권 양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법규 및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의 합병 과정에 외국투자자가 내자기업 주주의 주권을 매입할 경우 그 주권 매입금액 지불조건은《〈중외합자경영기업 합영각측 출자 약간규정》의 보충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제38조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기타 지역에서 투자 설립한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제39조 이 규정은 외경부와 국가공상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제40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집행한다. |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外经贸部、工商总局令2001年第8号，根据2015年10月28日《商务部关于修改部分规章和规范性文件的决定》修正）　　第一条　为了规范涉及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行为，保护企业投资者和债权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和有关外商投资企业的法律和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依照中国法律在中国境内设立的中外合资经营企业、具有法人资格的中外合作经营企业、外资企业、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以下统称公司)之间合并或分立。　　公司与中国内资企业合并，参照有关法律、法规和本规定办理。　　第三条　本规定所称合并，是指两个以上公司依照公司法有关规定，通过订立协议而归并成为一个公司。　　公司合并可以采取吸收合并和新设合并两种形式。　　吸收合并，是指公司接纳其他公司加入本公司，接纳方继续存在，加入方解散。　　新设合并，是指两个以上公司合并设立一个新的公司，合并各方解散。　　第四条　本规定所称分立，是指一个公司依照公司法有关规定，通过公司最高权力机构决议分成两个以上的公司。　　公司分立可以采取存续分立和解散分立两种形式。　　存续分立，是指一个公司分离成两个以上公司，本公司继续存在并设立一个以上新的公司。　　解散分立，是指一个公司分解为两个以上公司，本公司解散并设立两个以上新的公司。　　第五条　公司合并或分立，应当遵守中国的法律、法规和本规定，遵循自愿、平等和公平竞争的原则，不得损害社会公共利益和债权人的合法权益。　　公司合并或分立，应符合《指导外商投资方向暂行规定》和《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的规定，不得导致外国投资者在不允许外商独资、控股或占主导地位的产业的公司中独资、控股或占主导地位。　　公司因合并或分立而导致其所从事的行业或经营范围发生变更的，应符合有关法律、法规及国家产业政策的规定并办理必要的审批手续。　　第六条　公司合并或分立，应当符合海关、税务和外汇管理等有关部门颁布的规定。合并或分立后存续或新设的公司，经审批机关、海关和税务等机关核定，继续享受原公司所享受的各项外商投资企业待遇。　　第七条　公司合并或分立，须经公司原审批机关批准并到登记机关办理有关公司设立、变更或注销登记。　　拟合并公司的原审批机关或登记机关有两个以上的，由合并后公司住所地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以下简称国家工商总局)授权的登记机关作为审批和登记机关。　　拟合并公司的投资总额之和超过公司原审批机关或合并后公司住所地审批机关审批权限的，由具有相应权限的审批机关审批。　　拟合并的公司至少有一家为股份有限公司的，由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以下简称外经贸部)审批。　　第八条　因公司合并或分立而解散原公司或新设异地公司，须征求拟解散或拟设立公司的所在地审批机关的意见。　　第九条　有限责任公司之间合并后为有限责任公司。股份有限公司之间合并后为股份有限公司。　　上市的股份有限公司与有限责任公司合并后为股份有限公司。非上市的股份有限公司与有限责任公司合并后可以是股份有限公司，也可以是有限责任公司。　　第十条　股份有限公司之间合并或者公司合并后为有限责任公司的，合并后公司的注册资本为原公司注册资本额之和。　　有限责任公司与股份有限公司合并后为股份有限公司的，合并后公司的注册资本为原有限责任公司净资产额根据拟合并的股份有限公司每股所含净资产额折成的股份额与原股份有限公司股份总额之和。　　第十一条　根据本规定第十条第一款合并的，各方投资者在合并后的公司中的股权比例，根据国家有关规定，由投资者之间协商或根据资产评估机构对其在原公司股权价值的评估结果，在合并后的公司合同、章程中确定，但外国投资者的股权比例不得低于合并后公司注册资本的百分之二十五。　　第十二条　分立后公司的注册资本额，由分立前公司的最高权力机构，依照有关外商投资企业法律、法规和登记机关的有关规定确定，但分立后各公司的注册资本额之和应为分立前公司的注册资本额。　　第十三条 各方投资者在分立后的公司中的股权比例，由投资者在分立后的公司合同、章程中确定，但外国投资者的股权比例不得低于分立后公司注册资本的百分之二十五。　　第十四条　公司合并，采取吸收合并形式的，接纳方公司的成立日期为合并后公司的成立日期；采取新设合并形式的，登记机关核准设立登记并签发营业执照的日期为合并后公司的成立日期。　　因公司分立而设立新公司的，登记机关核准设立登记并签发营业执照的日期为分立后公司的成立日期。　　第十五条　涉及上市的股份有限公司合并或分立的，应当符合有关法律、法规和国务院证券监督管理部门对上市公司的规定并办理必要的审批手续。　　第十六条　公司与中国内资企业合并必须符合我国利用外资的法律、法规规定和产业政策要求并具备以下条件：　　(一) 拟合并的中国内资企业是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规范组建的有限责任公司或股份有限公司；　　(二) 投资者符合法律、法规和部门规章对合并后公司所从事有关产业的投资者资格要求；　　(三) 外国投资者的股权比例不得低于合并后公司注册资本的百分之二十五;　　(四) 合并协议各方保证拟合并公司的原有职工充分就业或给予合理安置。　　第十七条　公司与中国内资企业合并后为外商投资企业，其投资总额为原公司的投资总额与中国内资企业财务审计报告所记载的企业资产总额之和，注册资本为原公司的注册资本额与中国内资企业的注册资本额之和。合并后的公司注册资本与投资总额比例，应当符合国家工商总局《关于中外合资经营企业注册资本与投资总额比例的暂行规定》；在特殊情况下，不能执行该规定的，须经外经贸部会同国家工商总局批准。　　第十八条　与公司合并的中国内资企业已经投资设立的企业，成为合并后公司所持股的企业，应当符合中国利用外资的产业政策要求和《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合并后的公司不得在禁止外商投资产业的企业中持有股权。　　第十九条 公司吸收合并，由接纳方公司作为申请人，公司新设合并，由合并各方协商确定一个申请人。　　申请人应向审批机关报送下列文件：　　(一) 各公司法定代表人签署的关于公司合并的申请书和公司合并协议；　　(二) 各公司最高权力机构关于公司合并的决议；　　(三) 各公司合同、章程；　　(四) 各公司的批准证书和营业执照复印件;　　(五) 各公司的资产负债表及财产清单;　　(六) 各公司上一年度的审计报告；　　(七) 各公司的债权人名单；　　(八) 合并后的公司合同、章程；　　(九) 合并后的公司最高权力机构成员名单　　(十) 审批机关要求报送的其他文件。　　公司与中国内资企业合并的，申请人还应向审批机关报送拟合并的中国内资企业已投资设立企业的营业执照复印件。　　第二十条　公司合并协议应包括下列主要内容：　　(一) 合并协议各方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　　(二) 合并后公司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　　(三) 合并后公司的投资总额和注册资本；　　(四) 合并形式；　　(五) 合并协议各方债权、债务的承继方案；　　(六) 职工安置办法；　　(七) 违约责任；　　(八) 解决争议的方式；　　(九) 签约日期、地点；　　(十)合并协议各方认为需要规定的其他事项。　　第二十一条　拟合并的公司有两个以上原审批机关的，拟解散的公司应当在依照本规定第十九条向审批机关报送有关文件之前，向其原审批机关提交因公司合并而解散的申请。原审批机关应自接到前款有关解散申请之日起十五日内做出是否同意解散的批复。超过十五日，原审批机关未作批复的，视作原审批机关同意该公司解散。　　如果原审批机关在前款规定期限内，作出不同意有关公司解散的批复，拟解散公司可将有关解散申请提交原审批机关与公司合并的审批机关共同的上一级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该部门应自接到有关公司解散申请之日起三十日内作出裁决。　　如果审批机关不同意或不批准公司合并，则有关公司解散的批复自行失效。　　第二十二条　拟分立的公司应向审批机关报送下列文件：　　(一) 公司法定代表人签署的关于公司分立的申请书；　　(二) 公司最高权力机构关于公司分立的决议；　　(三) 因公司分立而拟存续、新设的公司(以下统称分立协议各方)签订的公司分立协议；　　(四) 公司合同、章程；　　(五) 公司的批准证书和营业执照复印件；　　(六) 公司的资产负债表及财产清单；　　(七) 公司的债权人名单；　　(八) 分立后的各公司合同、章程；　　(九) 分立后的各公司最高权力机构成员名单；　　(十) 审批机关要求报送的其他文件。　　因公司分立而在异地新设公司的，公司还必须向审批机关报送拟设立公司的所在地审批机关对因分立而新设公司签署的意见。　　第二十三条　公司分立协议应包括下列主要内容：　　(一) 分立协议各方拟定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　　(二) 分立后公司的投资总额和注册资本；　　(三) 分立形式；　　(四) 分立协议各方对拟分立公司财产的分割方案；　　(五) 分立协议各方对拟分立公司债权、债务的承继方案；　　(六) 职工安置办法；　　(七) 违约责任；　　(八) 解决争议的方式；　　(九) 签约日期、地点；　　(十) 分立协议各方认为需要规定的其他事项。　　第二十四条　合并后存续的公司或者新设的公司全部承继因合并而解散的公司的债权、债务。　　分立后的公司按照分立协议承继原公司的债权、债务。　　第二十五条　审批机关应自接到本规定第十九条或第二十二条规定报送的有关文件之日起四十五日内，以书面形式作出是否同意合并或分立的初步批复。　　公司合并的审批机关为外经贸部的，如果外经贸部认为公司合并具有行业垄断的趋势或者可能形成就某种特定商品或服务的市场控制地位而妨碍公平竞争，可于接到前款所述有关文件后，召集有关部门和机构，对拟合并的公司进行听证并对该公司及其相关市场进行调查。前款所述审批期限可延长至一百八十天。　　第二十六条　拟合并或分立的公司应当自审批机关就同意公司合并或分立作出初步批复之日起十日内，向债权人发出通知书，并于三十日内在全国发行的省级以上报纸上至少公告三次。　　公司应在上述通知书和公告中说明对现有公司债务的承继方案。　　第二十七条　公司债权人自接到本规定第二十六条所述通知书之日起三十日内、未接到通知书的债权人自第一次公告之日起九十日内，有权要求公司对其债务承继方案进行修改，或者要求公司清偿债务或提供相应的担保。　　如果公司债权人未在前款规定期限内行使有关权利，视为债权人同意拟合并或分立公司的债权、债务承继方案，该债权人的主张不得影响公司的合并或分立进程。　　第二十八条　拟合并或分立的公司自第一次公告之日起九十日后，公司债权人无异议的，拟合并公司的申请人或拟分立的公司应向审批机关提交下列文件：　　(一) 公司在报纸上三次登载公司合并或分立公告的证明；　　(二) 公司通知其债权人的证明；　　(三) 公司就其有关债权、债务处理情况的说明；　　(四) 审批机关要求提交的其他文件。　　第二十九条　审批机关应自接到本规定第二十八条所列文件之日起三十日内，决定是否批准公司合并或分立。　　第三十条　公司采取吸收合并形式的，接纳方公司应到原审批机关办理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变更手续并到登记机关办理公司变更登记；加入方公司应到原审批机关缴销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到登记机关办理公司注销登记。　　公司采取新设合并形式的，合并各方公司应到原审批机关缴销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到登记机关办理公司注销登记；新设立的公司应通过申请人到审批机关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到登记机关办理公司设立登记。　　公司采取存续分立形式的，存续的公司应到审批机关办理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变更手续并到登记机关办理公司变更登记；新设立的公司应到审批机关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到登记机关办理公司设立登记。　　公司采取解散分立形式的，原公司应到原审批机关缴销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到登记机关办理公司注销登记；新设立的公司应到审批机关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到登记机关办理公司设立登记。　　公司与中国内资企业合并的仅由公司办理有关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手续。　　第三十一条　公司合并的申请人或拟分立的公司，应自审批机关批准合并或分立之日起三十日内，就因合并或分立而解散、存续或新设公司的事宜，到相应的审批机关办理有关缴销、变更或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手续。　　第三十二条　公司应自缴销、变更或领取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之日起，依照《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等有关规定，到登记机关办理有关注销、变更或设立登记手续。　　设立登记应当在有关公司变更、注销登记办理完结后进行。　　公司合并或分立协议中载明的有关公司财产处置方案及债权、债务承继方案和审批机关批准公司合并或分立的文件，视为注销登记所需提交的清算报告。　　第三十三条　公司为新设合并或分立办理注销、变更登记后，当事人不依法办理有关公司设立登记的，应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三十四条　公司投资者因公司合并或分立而签署的修改后的公司合同、章程自审批机关变更或核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之日起生效。　　第三十五条　合并或分立后存续或新设的公司应自变更或领取营业执照之日起三十日内，向因合并或分立而解散的公司之债权人和债务人发出变更债务人和债权人的通知并在全国发行的省级以上报纸上公告。　　第三十六条　合并或分立后存续或新设的公司应自换发或领取营业执照之日起三十日内，到税务、海关、土地管理和外汇管理等有关机关办理相应的登记手续。　　公司与中国内资企业合并的，存续或新设的公司，还应根据有关外商投资企业的规定，到税务、海关、土地管理和外汇管理等机关，办理相关的审核手续。　　第三十七条　在公司合并或分立过程中发生股权转让的，依照有关法律、法规和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规定办理。　　在公司与中国内资企业合并过程中，外国投资者购买内资企业股东股权的，其股权购买金的支付条件，依照《<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的补充规定》执行。　　第三十八条　香港、澳门、台湾地区的投资者在中国其他地区投资举办的公司合并或分立，参照本规定办理。　　第三十九条　本规定由外经贸部和国家工商总局负责解释。　　第四十条　本规定自发布之日起执行。　　 |